

전주지방법원 2024. 10. 11 선고 2023가단6712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7. 26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게임제공업소 89.38㎡를 인도하라.
2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외부에 설치한 그린건축 간판 2개를 철거하라.
3. 피고는 원고에게 2022. 5. 20.부터 제1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5. 제1, 2,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허윤범

별지